
「5G B2B 서비스 활성화」 공모 안내서

202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목 차

I. 개요

1. 사업개요	1
2. 제안 요청내용	7
3. 사업수행·관리 요청사항	12
4. 컨소시엄 선정방안	16
5. 사업수행 관리	21
6. 기타	24

※ 붙임. 5G B2B 서비스 실증과제 추진현황

II. 과제 제안서(신청서) 양식 및 제안요청 세부내역

※ 별도 파일 참조

III. 사업 관리 규정 및 지침(각종 서식 포함)

※ 별도 파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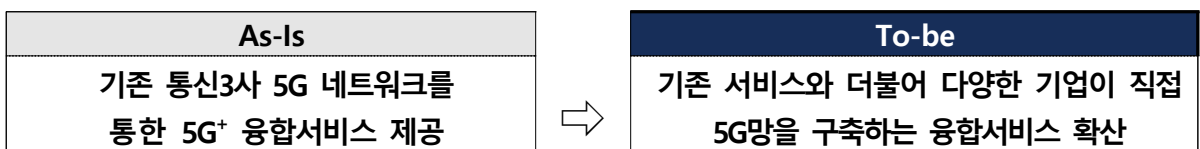
I. 개요

가. 사업목적

- 이음5G*(5G 특화망)와 ICT를 활용하여 민간분야의 활용·확산 효과가 높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음5G 융합서비스 적용 확대를 통해 5G 민간 수요 창출 및 활성화, 기반 기술 확산 등 5G 산업융합 선도
 - *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토지/건물)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
- 이음5G 신규사업자 발굴, 중소기업자 참여 유도를 통해 고성장 하는 5G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5G 산업생태계 활성화 촉진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음5G는 수요기관에 맞춤형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어 사회·경제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주요 수단으로 각광
 - 이음5G는 제조·서비스 등 산업과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필수 인프라이며, 산업과 융합시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가능
 - * 에너지, 제조, 의료, 미디어 등 **전통산업 및 서비스 전반에 5G 융합이 가속화**되어, '26년 주요 국가기반 산업의 **디지털화 매출 1.2조 달러 전망**(Kotra, '20.1월)
- 美·獨·日 등 주요국들도 이음5G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음5G 주파수 대역 할당 등을 통한 상용화 추진 및 산업 육성 진행
 - ※ (상용화 10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 한국, 일본 등('22.6월)
- 정부는 이음5G 정책 방향('21.1월) 및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21.6월)하여 4.7GHz 및 28GHz 대역 주파수를 공급하고, 이음5G 구축 주체를 다양한 5G 사업자로 확대
 - 이음5G를 통해 非 통신 기업도 이음5G를 활용하여 맞춤형 네트워크·서비스 구축 참여 가능



- 또한 「2022년도 5G+ 전략 추진계획(안)(22.2월)」 추진과제인 '이음5G 서비스 확산*'을 통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음5G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변혁의 기회를 제공

* 추진과제(이음5G 서비스 확산): ①이음5G 서비스를 통해 선도 서비스 도입 및 혁신 레퍼런스 확보, ②원활한 공급망 생태계 조성 및 선도기업 육성, ③이음5G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이음5G 융합서비스 지원 및 ICT 기업 참여 촉진을 통한 5G 시장 확대 및 혁신성장의 모멘텀 형성 필요

다.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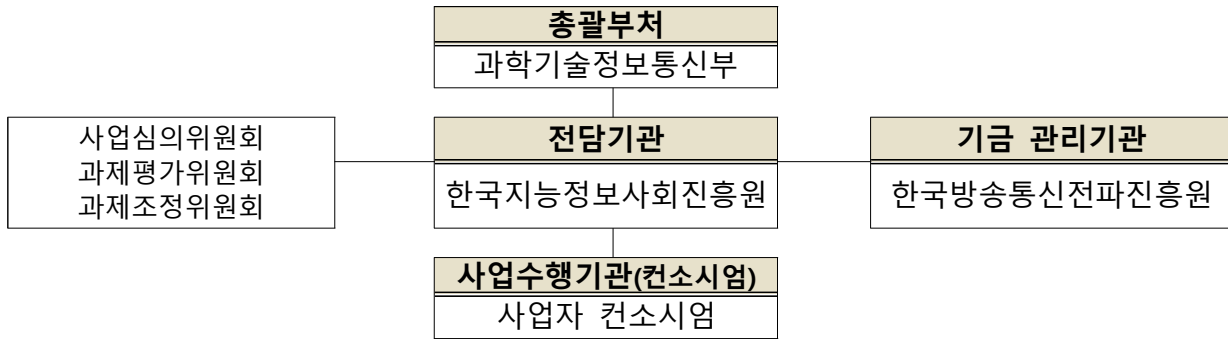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제3항(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8조 제1항(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0조 제1항(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라. 추진 경과

- '21.1월 : 「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1월 : 「MEC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6월 :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8월 :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수립 (관계부처 합동)
- '22.2월 : '22년도 「5G+ 전략」 추진계획(안) 수립 (관계부처 합동)
- '22.5월 : (국정과제 78-1) 5G 특화망 및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22.1월~'23.1월 :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민간의료, 제조)
- '23.2월 : 신성장 4.0 전략 (관계부처 합동)
- '23.1월~'23.12월 :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물류 및 수송, 제조, 자유)

마.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체계



□ 주요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 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금관리 수행 등 ○ 사업비 교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 관리, 예산 집행 및 정산, 수행 결과평가
사업심의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사업계획 및 공모안내서 심의·조정 ○ 과제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평가 ○ 사업수행을 위한 과제조정 및 협의 사항 심의
사업수행기관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 보고 ○ 사업 결과 활용 및 성과확산 추진 ○ 성과 활용 기간 운영 및 유지보수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p>※ 사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으로 구성</p>
	수요기관

▶ (사업수행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소기업(최소 1개 이상), 이음5G 지정·할당 주체(기관·기업), 수요기관은 참여기관으로 필수 등록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함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으로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 보고와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 (수요기관) 서비스 수요자로 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하여 사업 수행의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적용 및 활용하는 기관(기업)

※ 수요기관 요건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협회 등 민간단체

바. 재원분담 및 정산

○ 사업자 선정 수: 총 3개 컨소시엄(분야별 1개 컨소시엄 선정)

구분	분야	활용 인프라
지정 공모(2개 선정)	제조	이음5G (5G 특화망)
	스마트시티*	
* 민간 분야에서 활용확산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 제시 필요		
자유 공모(1개 선정)	위 지정 분야 외	

○ 정부출연금 규모: 총 34.5억원

※ 분야별 사업수행기관 당 11.5억원 내외, 총 3개 컨소시엄 선정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과제조정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컨소시엄별 11.5억원 내외로 지원될 수 있으며, 정부예산의 변경, 사업비 규모 및 사업수행 내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 ~ '24.12.31

○ 사업비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사업수행기관 자체 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
-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정부출연금, 자체 부담금(현금+현물) 분담은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정함

- 제안 컨소시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최소 비율 이상의 자체 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해야 함

* 대통령령 제3301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별표 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자체 부담금(현금) 부담기준		
기업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자체 부담금(현금) 부담 비율
•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자체 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자체 부담금의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자체 부담금의 15% 이상
•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기업 구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1항 참고
 ※ 위 표는 제안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1]을 본 사업에 맞게 용어를 해석하여 정리

- ※ (예외 사항)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공공기관 등의 경우 의무 자부담 면제
- 정부출연금을 원치 않는 참여도 인정되며 이 경우 자체 부담금만 정산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수정제안서)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고, 사업비는 과제 협약일로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
- 정산
 - 사업비 정산은 회계 연도에 따른 1년 단위의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 기관에서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

사. 추진 일정(안)

- 과제선정 일정계획
 - 2024. 3월 : 공모안내서 사전 공개
 - 2024. 3~4월 : 공모 안내 및 제안서 접수
 - 2024. 4월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 2024. 4~5월 : 수행계획서(수정제안서) 접수 및 협약체결
- 과제수행 일정계획
 - 2024. 협약일 ~ 12.31. : 사업 추진
 - 2024. 6월 : 착수보고회 개최
 - 2024. 9월 : 중간보고회 개최/중간보고서 제출
 - 2024. 9~10월 :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 2024. 12월 : 최종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2025. 1월 : 최종 수행결과 보고회 개최 및 성과평가
 - 2025. 1~2월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과제선정 및 수행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추진절차

구분	내용	대상
과제 공모(RFP) 공고	'24년 과제 공모내용 공고	N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서 접수	제안서 접수, 평가 준비	제안 컨소시엄 → NIA
사전검토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	NIA
사업 선정평가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제안내용 평가	과제평가위원회
과제 심의.조정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내용, 예산 등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NIA ↔ 사업수행기관
착수 및 사업비 지급	착수보고 및 정부출연금 지급 [사업기간 내 2회*(80%, 20%) 분할지급] * 협약체결, 중간보고	NIA ↔ 사업수행기관
사업 수행	사업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현물(장비) 실사 등 현장점검	NIA → 사업수행기관
사업 중간보고	당해연도 중간 추진실적 보고	사업수행기관 → NIA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최종 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	사업수행기관 → NIA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불인정금액/이자 반납	사업수행기관 → NIA

2

제안 요청내용

< 공통 사항 >

□ 제안 시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서술

- 모든 제안내용은 최대한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하고, 법적근거 등은 해당조항을 기재
 - ※ 구체화, 계량화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모안내서 상 기재된 요구사항을 참고, 과제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 *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수행계획은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 참여에 따른 ① 수요기관 역할, ② 사업의 유무형적 결과물 및 서비스 활용(성과활용기간* 포함)을 위한 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
 - * 성과활용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무상으로 최소 2년간 지원
 - 과제수행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일자리 창출 및 파급효과를 계량화 된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
- 본 공모안내서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추가 제안 가능

가. 이음5G(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운영

- (이음5G 인프라 구축·운영) 수요기관에 기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 5G 융합서비스 요구사항 등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음5G 인프라 설계 및 구축·운영방안 제시
 - 5G 단독모드(SA), 최신 5G 표준화 규격,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가상화 등 기술·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5G 기술 적용·고도화 방안 제시
 - 이음5G 인프라 구축 범위(커버리지 등) 및 세부 구성도, 제안 장비·시스템의 특징점을 제시하고 최적의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구축 인프라에 대한 성능·품질 검증방안, 보안성·안정성 확보방안 구체적 제시
 - 5G 융합서비스 적용 및 실증을 위해 수요기관에 기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기존 인프라 및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장성 등 안정적 연계 구축·운영방안 제시
 - 사업 기간에 5G 융합서비스 개발 및 충분한 실증기간 확보를 위해 관련 구성 장비/시스템 조달 및 납품, 설치, 성능 최적화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이음5G 주파수 이용) 수요기관의 5G 융합서비스 적용 모델을 고려하여 이음5G 도입유형, 운영 주체, 서비스 제공 대상, 도입방식, 주파수 공급 방식 등의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참여 시 자가망 설치자 신고 및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경우, 이음5G 신고·등록 자격 기준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하여 이음5G 주파수 공급되어야 함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파수 지정 시 수요처는 시·도지사에게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야 하며, 주파수 할당 시에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 주파수 공급 자격 취득을 위한 상세계획(일정 포함) 반드시 제시

< [참고] 이음5G 도입유형 및 도입방식 >

유형	신청·운영주체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 대상	도입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Type1	수요기관	수요기관 한정	수요기관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수요기관에 주파수 지정
Type2	수요기관	수요기관+협력사, 방문객	수요기관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수요기관에 주파수 할당
Type3	제3자 등 (통신3사 제외)		제3자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제3자 등에 주파수 할당

나.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

- (모델 발굴) 제안 분야 및 수요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확산 가능성이 높은 이음5G 기반의 민간부문 5G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 제안 분야 및 수요기관의 기존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음5G 적용 필요성 제시
 - 제안한 5G 융합서비스 모델명, 서비스 개념, 서비스 내용 기술 제시
 - ※ 제안한 5G 융합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이미지와 서비스 적용 전/후 변화된 모습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제시
 - 이음5G와 5G 특성(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결합되어 기존 서비스 환경 대비 개선 효과 및 기대효과를 서술하고 정성적·정량적 성과지표로 제시
- (개발·실증) 이음5G 인프라, 장비·디바이스, AI, 빅데이터, 민간 클라우드 등 최신 ICT를 활용하여 수요기관 대상 5G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실증
 - (개발) 융합서비스 모델 적용 범위, 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 상세 설계 및 구성,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개발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증) 효율적·안정적 실증 방안, 서비스 운영 및 장애 대응 방안, 수요기관의 서비스 보안지침(시스템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준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 5G 융합서비스 활용·확산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사업종료일로부터 최소 무상 2년간)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및 고도화, 지속적 성과활용 방안 제시
 - (활용) 사업 결과물(이음5G 인프라, 5G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지속적 활용 방안을 서술하여 제시
 - ※ 수요기관 입장에서 사업 결과물이 필요한 이유,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이음5G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이유, 사업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방안 제시
 - (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 결과물들의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와의 협력, 운영·유지보수 전담 조직 운영,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운영·유지보수 비용 분담계획 등을 제시
 - ※ 서비스 제공 중지 최소화를 위한 장애 대응 방안, 장비·시스템 등 고장 발생 시 대응 방안(예비품 확보 등)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성과확산)** 선도 적용·실증한 5G 융합서비스 모델에 대해 관련 민간 분야 도입·확산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 제시
 - ※ 해당 5G 융합서비스 모델의 확산 가능 방안, 구체적인 서비스 추가 도입 계획, 서비스 모델 다각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과확산 방안 제시
 - 이음5G 활성화와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실증 사례 공유를 위해 해당 분야 표준 템플릿* 및 사례집 제작 협조
 - * 이음5G 인프라 구축,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적용 등 사업 결과에 대해 향후 관심 기업들의 사업 참고용으로 템플릿 양식은 총괄부처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 실증 사업을 통한 AI 기반 이음5G 활용 사례 제작·배포
 - ※ 생성 가능 데이터 제안 및 향후 확산·활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제안

라. 기타 요청사항

- **(국책 연구 결과 활용)** 사업 추진 시 ICT 분야의 국책 연구과제 결과물(국산 칩셋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장
 - ※ 국책과제로 개발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칩셋(국산 NPU 등) 사용을 권장
- **(장비인증)** 사업에 적용되는 장비·단말의 검증 또는 인증(보안적합성 검증, 전자파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내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 및 검증 또는 인증 관련 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결정

- ※ 협의된 일정 내에 검증/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제안한 성능 및 규격에 준하는 검증/인증된 장비단말 등으로 교체적용하여야 하며 교체적용 장비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확정
- **(정보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 매체 등에 대한 정보 보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 제출 및 활용되는 제반 정보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제시
 - ※ 민감정보(개인정보신상정보 등), 비공개 정보 및 운영을 위한 계정정보 등 대외 유출시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보호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발생 원인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재발 방지책 또는 해결 방법 등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성과도출)** 5G 융합서비스 적용 개선 효과, 활용·확산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효과 제시
 - 사업수행에 대한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제시
- **(중소기업 상생협력)** 본 사업 참여기관(중소기업) 사업비 분배 비율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제시
- **(선순환 생태계 조성)** 본 사업을 통해 장비개발사, 서비스 개발사 등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일자리 창출)** 사업수행 기간 내 컨소시엄의 신규 참여 인력(신입/경력) 채용계획 및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계획과 세부 산출 근거 제시
 - (직접고용) 사업수행 기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업무 투입을 위한 신규 참여인력(신입/경력) 채용계획 제시
 - (간접고용) 본 사업 사업비와 자체 투자 예산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분야의 간접고용 창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 제시
- **(사업보고)** 사업수행에 대한 수시, 주간/월간 보고, 착수/중간/최종 결과 보고(발표) 자료 제출 등 사업 보고방안 제시
- **(탄소중립)** 사업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 등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경제 촉진을 위한 방안 제시
 - ※ 제안하는 환경보호 방안을 통해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정보가 도출되어야 함

- **(현장점검 및 사업검수)** 사업수행, 성과활용기간의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운영·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전담기관에서 현장점검 및 사업 검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이며 관련하여 적극 협조
 - 성과활용기간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사업수행기관→전담기관, 연 1회, 사업종료일로부터 무상으로 최소 2년간 지원)
 - ※ 운영 결과보고서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대표로 제출
- **(확산의무)** 「이음5G(5G 특화망) 얼라이언스*」 참여 의무화, 제안 분야 산업계 기관(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 의무 개최(연 2회) 등 이음5G 확산 활동 참여
 - * '22.12.20일 발족, '22년 5G 특화망 실증사업에 참여한 42개 기관으로 구성(국정과제 78-1)
- **(결과공개)** 이음5G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실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 협약 전 결과 공개범위 확정
 - ※ 사업 결과 공개 범위는 총괄부처와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
- **(성과홍보)** 제안사(컨소시엄)는 컨퍼런스, 전시회, 사업 성과보고회 등 총괄 부처와 전담기관이 주관·참여·지원하는 행사, 언론홍보 등에 적극 참여 협조
 - ※ 홍보채널, 미디어, 언론 등에 주요 성과에 대해 사업수행기관별 최소 2회 이상 홍보 (홍보 추진 시 반드시 총괄부처 및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필요)
- **(성과관리)** 성과활용기간 동안 사업 성과관리 현황(활용현황, 추가공급, 고도화, 확산, 관련 매출액 등) 및 확산방안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
- **(요구자료 대응)** 각종 요구자료 및 수시 대응에 필요한 사업 관련 자료 작성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의 적극 협조

가. 사업수행

- 장비 설치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 협의 후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제안사(컨소시엄)에서 부담
- 안정적인 장비 이전을 위하여 필요 시 무진동 차량, 포장시 완충재 사용 등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조립/해체, 운송)을 가입하고 이와 비용은 제안사(컨소시엄)에서 부담
- 사업수행 시 인프라 공사(정보통신공사 등)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
- 인프라 구축 공사(정보통신공사 등)에 감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 수행
※ 감리 업체 선정 및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
- 제안사(컨소시엄)는 수요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요기관 내 네트워크 운영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컨소시엄)는 본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와 관련된 설계, 설치, 제반공사, 장비 운영시험, 회선 개통 시험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
- 본 사업에서 구현되는 기술, 장비, 서비스 등의 기능과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장비, 서비스 등의 기능과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 제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AI기반 개방형 5G-A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와 지역거점(판교, 대전, 대구, 광주) 활용” 권장
- 제안사(컨소시엄)는 국내 민간 클라우드의 우선 이용과 ICT 분야의 국책사업 결과물 활용 등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우선 반영을 고려해야 함
- 제안사(컨소시엄)는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담당자 등 접근 권한과 영역에 대해 명확한 구분과 서비스 관리 및 운영 계정 등에 대한 통제 및 이력 관리 준수

나. 사업 관리

- 제안사(컨소시엄)는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적절한 세부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제안사(컨소시엄)는 사업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및 사업수행 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 요소 등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 보고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수행
 -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주요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마일스톤 완성점에서의 수행 결과물 제시
 - 자율적으로 보안 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및 체계 제시
- 제안사(컨소시엄)는 사업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항은 제안사(컨소시엄)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컨소시엄)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방안 및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법령·고시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참고)
 -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참고
 - 제안내용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결과를 제안서에 필수 첨부
 - ※ 위탁 처리시 위탁협약 체결 즉시 의무적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 사업착수와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적 공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 등을 사업 제안서에 필수적으로 포함
 - 제안기관·기업이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경우 필수적으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에 반영
 - 사업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은 사업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사업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고의 및 중대한 사항 위반 시에는 협약해약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부과

다. 컨소시엄 및 인력구성

- 컨소시엄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 분야별·업무별 실무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제안 컨소시엄 주관/참여)
 - 조직체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역할, 기관별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
 - 기술 특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인력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 인력의 정보(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관, 참여율 등) 명기
 - 컨소시엄은 사업책임자(PM)와 주관기관/참여기관 별로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각 5명 이상의 참여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실무책임자 명시
 - ※ 사업책임자(PM) 및 기관별 실무책임자는 사업관리(총괄부처, 전담기관의 수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협조가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의 PM 및 전담 인력은 본 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없이 변경할 수 없음(단, 인력교체 필요 시 전담기관과 협의 후 조치 가능)
 - ※ 사업 PM은 참여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참여 인력은 사업착수 시점에 100% 투입이 원칙이며, 참여 인력 변경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전담기관의 참여 인력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해야 함
 - ※ 협약 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공동수급 및 전문기술 중소기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라. 지원 부문

- (유지보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유지보수 대상의 특성 및 제공서비스를 고려한 유지보수 추진
 - 근무 취약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 (기술지원)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운영 등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투입 장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자료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도록 함

마. 보안 부문

- 사업 수행계획서 및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참여인원은 본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등 외부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취합
-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과제자료 노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하고 시행

바. 기타사항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품질보증 방안 및 각종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계획을 제시
 - 본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 범위는 사업의 공모안내서,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협상서, 산출내역서, 수행계획서 등에 기술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게 되며, 필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안전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및 이행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대책 및 이행방안 제시
 - 사업장 안전과 관리한 안전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계획 등을 제시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

4 컨소시엄 선정방안

가. 컨소시엄 선정

- (선정 분야) 분야별 1개 컨소시엄을 선정

< '24년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 선정 분야 >

구분	분야	활용 인프라
지정 공모(2개)	제조	이음5G (5G특화망)
	스마트시티*	
자유 공모(1개)	위 지정 분야 외	

- 동일 분야 내, 분야 간* 중복 제안 및 컨소시엄 참여 불가(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 5G 산업융합 기반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모사업('24년 5G B2B 서비스 활성화) 선정 분야(제조, 스마트시티, 자유)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모사업('24년 28GHz 산업융합 확산) 선정 분야(자유)
- 기수행된 이음5G 실증과제의 융합서비스 모델과 차별화된 모델 제안·제시
 - * 붙임의 이음5G(5G 특화망) 실증과제 현황 참조
- 제안하는 과제가 “제안 분야”에 적합한 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및 컨소시엄 구성

- (지원대상) 이음5G를 활용하여 민간·산업 분야에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선도 적용을 위한 공급기업과 서비스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사업수행을 위한 이음5G 지정·할당 주체(기관·기업), 수요기관*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컨소시엄에 구성되어야 함

▶ (수행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 (수요기관) 과제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요자로서 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하여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기업

-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 참여 불가) 과기정통부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공모 시 5G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는 컨소시엄 참여 불가

- * '24년 5G B2B 서비스 활성화(NIA), '24년 28GHz 산업융합 확산(NIPA)
-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기업)은 제안 시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 이동통신 3사 및 자회사 기준 >

1. (이동통신 3사)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235호)에 따라 상용주파수를 할당 받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2. (자회사/상법)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이동통신 3사 (모회사)가 가진 회사(상법§342조의2①)
3. (자회사/공정거래법) 이동통신 3사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지주 회사로부터 그 사업 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즉 자회사(공정거래법§2 8호)

- (중소기업 참여) 최소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컨소시엄에 구성되어야 함

-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제안 시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기업규모 구분 >

- o 기업규모인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이음5G 지정·할당 주체(기관·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음5G 지정·할당 주체인 기관(기업)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컨소시엄에 구성되어야 함

- ※ 사업 제안·참여 시 자가망 설치자 신고 및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경우, 이음5G 신고·등록 자격 기준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하여 이음5G 주파수 공급되어야 함

- 사업 기간 내 주파수 공급 자격 취득을 위한 상세 계획(일정 포함) 반드시 제시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파수 지정 시 수요처는 시·도지사에게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야 하며, 주파수 할당 시에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수요기관 요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협회 등 민간단체

-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공공기관 유형은 "수요기관"에서 제외

- ▶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③ 국립·공립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수요기관 지정)에 명시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지원자격 제한 요건

< 지원자격 제한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 중인 사업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정산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기술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업(기관)
-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제안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제안기관이 귀책 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유사 분야 지원사업(24년 5G 산업융합 기반 조성 사업 등)에 동시 선정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 접수 마감일 이후 위 기준에 해당하게 될 경우, 과제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제안기관의 과제의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및 협약체결 이후 컨소시엄 구성 변경은 불가

다. 선정방법 및 선정절차

□ 과제 신청 방법

-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 접수방법 : 공고문에 따름
- 접수처 : 공고문에 따름
- 문의처 : 공고문에 따름

□ 공모안내서 설명회

- NIA 홈페이지에 추후 자세한 일시 및 장소 안내 예정

□ 사전검토 (1단계)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공모공고서 및 안내서 기준
 - ※ 단, 비영리기관(대학, 협회 등)의 경우 제9조 제2항 적용 제외
 - (검토대상) 기한 내 접수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담당자 등이 수행계획서와 첨부·제출 서류 등 검토

- (검토결과)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9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평가(2단계)

- 평가 적용 규정 및 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련 규정 적용
 - ※ (적용 규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따름
 -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된 평가대상 선정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발표
 -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내외 실시
 -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 일정 등 안내 시 공지 예정
 - 제안발표는 제안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 불참 시 서면 평가로 진행
 - 발표 자료는 이미 제출한 발표 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하고, 접수 기한 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과제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조정

-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내용 및 수행 일정, 예산의 적정성 등 검토·심의하여 조정·확정
- 과제조정위원회 조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협약체결 및 사업비(정부출연금) 지급

-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제안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컨소시엄 간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지급
 - ※ 협약체결 직후 80%, 중간보고(중간점검) 후 20% 지급(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시점에 상황을 고려하여 전담·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

< 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5)	•(목표) 과제 추진방법·일정·절차 및 목표의 적절성	2
	•(계획) - 과제 목표 달성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술, 법·제도적 제약사항과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3
수행 내용의 적합성(30)	•(서비스 유용성) - 서비스 규모, 적용대상의 적정성 및 필요성 - 서비스 시나리오(제공방안 포함)의 구체성 및 필요성(활용성, 사용가치) - 서비스 활용방안의 적정성 - 서비스를 통해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	13
	•(이음5G 활용성) - 이음5G 필요성의 적절성 및 우수성 - 이음5G 인프라, 디바이스·단말 등 도입(일정 등)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이음5G 주파수 확보·활용방안 및 성능·품질 안전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	7
	•(적용기술의 우수성) - MEC, 5G SA, Rel.16/17 등 기술·표준화 규격 적용의 우수성 및 적정성 - 이음5G 기반 장비·단말, 융합 디바이스 제안 기술의 우수성 - 민간 클라우드 활용,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ICT분야 국책 연구과제 결과물(국산 칩셋 및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적용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서비스 적용기술의 우수성	10
차별성 및 활용·확산 가능성(30)	• (차별성) - 기존 서비스 대비 정성적·정량적 개선 성과, 특징점 등 차별성 및 우수성 - 이음5G 기반 장비·단말, 융합 디바이스 활용의 차별성 및 적절성	10
	• (확산 가능성) - 적용 대상 추가 발굴·확산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국내외 연관산업 진출 등 이음5G 중장기 발전방안의 적절성	10
	•(성과활용기간 내 유지방안) - 성과활용기간 내 실적·성과 분석 및 활용 등 사후관리의 적절성 - 사업기간 종료 이후 사업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운영 지속가능성 - 성과활용 기간에 대한 사업화 재원 확보 및 비용/수익 구조의 적정성 (서비스 유지·운영(소요예산 포함) 방안의 구체성 등)	10
수행능력의 우수성(2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컨소시엄 내 인력구성, 투입 비율,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 추진체계 및 컨소시엄 간 역할 분담의 타당성	7
	•(신규사업자 참여도) - 이음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자 발굴 및 사업 참여 의 적절성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신규 중소기업 참여 확대 노력의 구체성 및 우수성	10
	•(위험관리) - 인프라 구축(시스템, 장비) 지연 발생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의 적절성 -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 개인정보보호 등 사업 수행시 필요한 법령 및 규정 준수의 적극성 및 우수성 - 서비스 제공 중지 최소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성	3
예산편성의 적절성(10)	•(예산 편성) 예산의 구성, 세부 편성항목, 비용 규모 등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규모의 적절성 - 사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비 분배 비율의 우수성 - 사업비 비목, 세목별 항목에 대한 규모, 산출내역 및 용도에 대한 적절성	10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5)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추진의 적정성 •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5
평가점수 합계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30)	•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5

사업수행 관리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가. 사업수행 관리

- 동 사업이 공모과제 방식(매칭펀드 등)으로 추진됨에 따라, 협약체결~정산까지의 사업관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지침에 의거 수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재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 상기 지침 등은 재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제안사는 반드시 상기 지침과 상기 지침에서 참조하는 지침·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에서 유관 교육 진행 시 모든 참여기업들의 담당자는 필참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사업관리 유의사항

- **(업무보고회)**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은 전담기관 승인하에 참여사 모두가 참여하는 착수, 중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 보고자료, 중간 결과자료, 최종 결과자료 등을 제출
 - ※ 착수, 중간, 결과보고, 성과보고는 컨소시엄 총괄책임자(PM) 또는 주관기관 실무 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진행해야 함
- **(월간보고)** 전담기관에서 정한 월간 보고 양식에 의거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수시 보고 요청 시 사업 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우리원(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현장점검)** 전담기관은 중간/최종 결과자료, 중간/최종 정산자료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정부 국책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연계, 회선 제공 및 다양한 결과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하도급(위탁용역))**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업수행기관의 모든 하도급(위탁용역 등)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협의되지 않은 재하도급 불가)
 - ※ 위탁용역계획, 수행 기간, 소요 예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함
- **(변경관리)** 사업수행 기간 중 사업목표, 사업내용·범위, 예산, 참여 인력 등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수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참여기관은 전담기관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 수행기관이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주요 수행계획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 **(예산편성)** 과제 예산편성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 ※ 사업비 불인정 기준 중 공통사항 :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히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 거래가 있는 경우 수행계획서에 명확히 명시할 것

- ※ 정산 위탁수수료는 표준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하여 주관기관이 편성
- **(계좌관리)** 총 사업비의 현금(정부출연금+자체 부담금 현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운영하여야 함
 - (환수)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 하되 본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불인정 환수됨
- **(회계·정산)** 회계·정산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이 이를 대행 하며, 컨소시엄 내 모든 사업자는 회계·정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회계 법인의 정산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 사업비 정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
 - 전담기관 또는 위탁 회계법인이 사업비를 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 **(결과물의 귀속)** 사업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장비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소유로 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유형적 결과물 귀속 문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은「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 필요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성과활용기간)** 사업수행 결과로 구축된 시설물, 시작품 등 사업수행 결과물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유지되어야 하며, 성과활용 기간(사업종료일로부터 무상으로 최소 2년간 지원) 내에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전담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현장실사, 관계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제안사는 수요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당 융합서비스 모델의 유지·보수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 등 운영안 제시 필요 **유지 의무(2년 이상)** 불이행 시 **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청렴 이행)**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모든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추가 제안)**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가.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안 조건표 작성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은 별첨된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전담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제안 참여 세부 컨소시엄 구성, 적용 기술·기관, 도출성과, 컨소시엄의 특·장점과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

나.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작성규격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는 A4 세로 형태, 제안발표 자료는 A4 가로 형태의 PDF 파일 형태로 작성해야 함(150p 내외권장)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가격산출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공모과제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공모과제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 상기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제안서 평가 시스템(DPMS) 활용을 위한 사항임

다.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효력

- 공모과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총괄부처 및 전담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전담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공모과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모과제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라.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 내용 보완 의견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마. 제재 조치

- 제안기관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신청 서류, 기타 자료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및 관련법에 따른 제재
- 과제 수행 중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차년도 동일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의무유지기간(2년 이상) 미준수 시 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수행결과 평가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결과평가 실시

사.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 (1)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2)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3)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14)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15)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 (16)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담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17)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 (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제정 2021.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기술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기반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AI 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안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산·학·연·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하나, AI 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고려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개발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활용하며,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 AI 사업확산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며, 국제사회와도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추진의 결과물이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성과가 창출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널리 공유되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 일동

붙임

이음5G(5G 특화망) 실증과제 현황

구 분		주관기관	수요처	이음5G 융합서비스	
'22년	공공 (7개)	공공 의료	KT	분당서울대병원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및 약품/린넨 무인 이송 서비스
		물류	SKT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AI Vision기반 자동물류 적재로봇 및 통합제어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자율주행 로봇과 IoT 활용 변전소 무인점검
		안전	아이티공간	한국산업단지 공단(경기반월)	Massive IoT 활용 전기/설비/환경/유해가스 감시 시스템
		국방	KT	해군본부	자율주행 차량 및 AI영상분석 활용 활주로 안전관리 및 조류탐지
		자유	이에스이	한국수자원공사	XR 및 디지털트윈 활용 스마트 정수장 운영·관리 체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360카메라·VR·AI 활용 실시간 재난상황 지휘 통제
	민간 (4개)	민간 의료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즈	이대목동병원	CT 3D 데이터 활용 수술(가슴부위) AR 가이드
		제조	KT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제조·설계·시험 데이터 페이퍼리스 환경구축
		교육 (계속)	KT	삼성서울병원	28GHz 기반 3D 홀로렌즈 활용 의료 교육훈련
		문화 (계속)	스마트미디어산업 진흥협회	호텔롯데롯데월드	28GHz 기반 몰입·실감형 가상체험 어트랙션
'23년	민간 (3개)	제조	세종텔레콤	HD현대중공업	5G 특화망 기반 조선산업 디지털 혁신
		물류	가이온	드론테스트베드	5G 특화망 기반 드론융합서비스 실증
		자유	큐비콤	YES24 물류센터	5G 특화망 기반 자동화 물류센터 AGV/AMR 실증

Ⅱ. 과제 제안서(신청서) 양식 및 제안요청 세부내역

※ 별도 파일 참조

Ⅲ. 과제 관리 규정 및 지침

(각종 서식 포함)

※ 별도 파일 참조